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호비전]

정 보 공 개 서

[시호비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04. 29.

[(주)시호비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청담동, 8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2141-125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512-008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2141-1250]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시호비전	시호비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청담동, 8층)			
	법인 설립등기일 ^①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4.04.15	1994.05.02	김민지	02-2141-1250	02-512-0080
	법인등록번호	110111-1029192	사업자등록번호	120-81-3839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본 인	김민지 (주)시호비전	SEEHO VIS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청담동, 8층)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민지	02-2141-1250	02-512-008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김태옥 (주)시호비전	SEEHO VISION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민지	02-2141-1250	02-512-008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시호비전]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시호비전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으며 인간은 눈을 통해 세상을 접하고 눈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눈 건강을 지키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며 한국 안경 유통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시호비전의 안경원 브랜드 시호비전의 뜻은 볼 視(see) 좋을 好(ho), 비전(vision)을 의미하며 건강한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밝게 보도록 기여하는 기업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 호 ^②	시호비전 00점	
상표(서비스표) ^③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5-003180
광 고 ^④	TV(케이블TV포함), 라디오, 잡지, 지역정보지, 기타 온라인 매체	
그 밖의 영업표지		

(주)시호비전은 시호비전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안경업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할인마트 내에 안경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독점 라이선스 상품 수입, 안경 브랜드 개발 및 제조 등을 통하여 한국 안경 유통업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주)시호비전은 시대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업계 최초로 바코드 시스템과 ERP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함은 물론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해 품질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유통/서비스 시스템을 정착시켜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력, 인력, 판매망 및 서비스 분야를 보유한 (주)시호비전은 안경업계의 가장 잘 준비된 기업입니다. (주)시호비전은 이와 같은 점을 십분 활용하여 안경분야의 World Best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고객만족, 가치제공, 효율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그랜드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주)시호비전은 우리나라 안경업계의 한 축임을 자부하며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진정한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고객 서비스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

현재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Value 1. Network

각 상권 내 가장 입지가 좋은 점포를 개발함으로써 강력하고 가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

Value 2. Advanced System

바코드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ERP(전사적 자원관리), POS시스템, 자동발주, EDI시스템, CRM시스템 도입 등 모든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여 안경유통업계의 선진화 주도

Value 3. Human Resource

분기별 직무교육,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매장에 실력있는 안경사를 배치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①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146,274	5,805,019	-1,658,744	1,834,368	-657,184	-1,038,854
2022년	3,592,675	5,866,447	-2,273,772	1,397,605	-626,275	-615,027
2023년	3,066,918	5,287,932	-2,221,014	1,263,267	55,972	-216,545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민지	대표이사	2016.07. ~ 현재	(주)시호비전 대표이사	업무 총괄
	김태옥	회장	1999.01. ~ 현재	(주)시호비전 그룹회장	그룹 경영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①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5	-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①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해당사항없음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사항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사항없음			
특수관계인	해당사항없음			

(계열회사)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SEEHO VISION		2007.05.21. 출원 2008.05.07. 등록	제 45-207-0002036 제 45-0023181	㈜시호비 전	2028.05.0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시호비전] 가맹사업 현황

1. [시호비전] 을 시작한 날: 2002년 01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4년 9월 2일)

2. [시호비전] 연혁

가맹본부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 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한국옵티그마	시호비전	김태옥	2002.01.01. ~ 2007.04.1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청담동)
(주)시호비전	시호비전	김종섭	2007.04.16. ~ 2016.06.3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청담동)
(주)시호비전	시호비전	김종섭, 김민지	2016.07.01. ~ 2016.07.3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청담동)
(주)시호비전	시호비전	김민지	2016.08.01. ~ 현 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청담동)

3. [시호비전] 업종

영업표지	업종	
시호비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도소매, 제조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렌즈 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시호비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8	28		24	24		22	22	
서울	4	4		3	3		3	3	
부산	2	2		1	1		1	1	
대구									
인천	5	5		5	5		3	3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	1		1	1		1	1	
경기	8	8		7	7		8	8	
강원									
충북	2	2		1	1		1	1	
충남	1	1		1	1				
전북									
전남	1	1		1	1		1	1	
경북	1	1		1	1		1	1	

경남	3	3		3	3		3	3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시호비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1	33	1	5		3	28
2022	28		4			24
2023	24		2			22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파일명: 가맹사업자내역)

6. [시호비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시호비전]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②

[시호비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은 258,356천원(부가세 별도)으로 추정 됩니다. 이는 2023년 1년간 가맹점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합한 금액입니다. 12개월을 운영하지 않은 매장에 대해서는 연매출로 환산하여 계산되었으며 카드사매출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 말 기준 운영 가맹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지역 ^④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⑥	22	264,525	10,143	660,045	18,226	29,341	1,235	
서울	3							
부산	1							
인천	3							
세종	1							
경기	8	347,502	13,179	660,045	18,226	113,213	6,630	
충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3							
----	---	--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시호비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시호비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22	13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시호비전]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3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73,756	73,756		
광고	소계	2023.01-2023.12	73,436	73,436		
판촉	소계	2023.01-2023.12	320	320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청담동지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02-515-185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시호비전을 찾아 글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②	조치일자 ^③	조치내용 ^④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시호비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가입비	6,600	영업개시일 또는 계약체결일 익일	인테리어 공사 이전까지 해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미반환	
컨설팅비	6,600	영업개시일 또는 계약체결일 익일	미반환	점포개설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점포/상권 개발비	4,400	영업개시일 또는 계약체결일 익일	미반환	점포개설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4,400	영업개시일 또는 계약체결일 익일	교육훈련 실시 이전 계약해지 시	교육훈련 개시이후 미반환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상품보증금	10,000	영업개시일 또는 계약체결일 익일	가맹수수료 / 상품대금 미지급 등	계약 종료 시 채권 상계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2,000
가입비	6,600
컨설팅비	6,600
점포/상권 개발비	4,400
교육비	4,400
상품보증금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61,500~200,500			
인테리어	협력업체	30,000 (보통형)	계약금 : 30% 중도금 : 30% 잔금 : 40%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500천원 추가부담
		50,000 (고급형)			
간판제작 및 부착	협력업체	5,000~7,000	완료 후 3일 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현장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초공급 상품비용	가맹본부	80,000	물품공급 7일전	상품 미공급시	가맹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검안기	협력업체 외	23,000~45,000		매장 open전 구비	국산/수입품 차이
옥습기	협력업체 외	15,000~25,000		매장 open전 구비	국산/수입품 차이
렌즈미터	협력업체 외	1,500		매장 open전 구비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음.
공구셋트	협력업체 외	1,000		매장 open전 구비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음.
컴퓨터 장비 및 POS설치	협력업체 외	5,000		매장 open전 구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인쇄물/기타 광고물	협력업체	1,000		매장 open전 구비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②
당사 영업본부 (전화:02-2141-1250)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②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안경사 자격증을 소유할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2년제 대졸이상, 안경광학과 졸업	안경사 면허증 소지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시호비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영업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주 2/3이상 참석, 50% 이상 찬성 시 추가적으로 영업 중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전국 단위 광고는 총광고비에서 가맹점수의 비율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지역단위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분담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광고비/ 가맹점수	익월 15일	집행 취소시	행사 진행후	전분기 총매출액 비율
영업표지 사용료	가맹본부	월 550	익월 5일	반환없음	상표사용/컨 설팅 비용	매월 지급
전산사용 수수료	가맹본부	월 198	익월 25일	반환없음	ERP 사용 비용	매월 지급
정기교육비	가맹본부	실비	익월 25일	반환없음	가맹중 필수교육 비용	매월 지급
점 대표자 교육 비용	가맹본부	실비	익월 25일	반환없음	가맹중 필수교육비용	매월 지급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없음	지연이자	금전지급의무 지체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가맹본부	2.5%	상품대금 결제일	반환없음	카드수수료	상품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시호비전 안경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신규계약에 따른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2,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거래처 기준에 따라 일정범위 내(5%~8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시호비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시호비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시호비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시호비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필히 가맹본부에 사전 등록된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시정 요구 (거래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각 가맹점은 모든 소비자에게 사전에 라벨에 표시된대로 공정하게 동일한 판매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객신뢰의 확보를 통한 영업경쟁력 확보의 일환입니다.

귀하가 라벨에 표시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안경테, 렌즈,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용품, 기타 등의 유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시호비전 SEEHO VISION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대형 할인점 1개당 1점포	계약시 별도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시호비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시호비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유통업체명 ^②	주소	취급품목 ^③	가맹점과의 구분 ^④
온라인	자사몰	www.kindlove.co.kr	안경테/선글라스	구분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99	-	1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전용상품 없음	*전용상품 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시호비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 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4조 제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1항
○ [시호비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4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취급, 판매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가맹본부의 영업관리상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영업정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역공동 광고, 마일리지제공, 전산시스템 사용, 외부기관 업무 제휴 등)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서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통과된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가맹점 이외의 매장으로 유출함으로써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결제일 기준으로 상품 대금, 월정 정기지급금 등(상품, 창고비, 광고분담금 등)의 전액 또는 일부의 결제의무를 ①연속적으로 2회 이상 미결제 또는 연체하는 경우 ②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미결제 또는 연체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한 상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은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별로 차별하여 판매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매장 종사원이 계약서에 규정된 교육훈련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월 점대표자 회의에 연 3회 불참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상권 내에서 타 상호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테리어, 실내구조, 간판 등 상호와 관련한 CI를 변경한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여 가맹본부 또는 다른 가맹점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중요한 계약사항 및 영업방침 위반으로 가맹본부의 코드 해제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코드해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매장 인테리어를 상당기간 방치함으로써 매장의 노후화가 심하여 가맹본부의 통일된 브랜드 관리 및 고객 서비스 제고에 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점 매장 오픈 이후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매장 및 간판의 축소 또는 확대를 한 경우와 일부를 포함하여 전대한 경우	제35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

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5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외한다.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 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5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수정 및 변동사항은 별지를 첨부함으로써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5조 제1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예정일 3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서면승인이 있기 전에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특별손해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③	비고 ^④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및 임대인 승인 포함, 60 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 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10일 소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영업본부 (02-2141-125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
은 계약이행 보증금과 가맹비를 납입하고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맺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
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절차 참조	
대리 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가 시호비전과 동일한 업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함께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사전에 필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①	경업허가 절차 ^②	비고 ^③
○ 안경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영업본부 (02-2141-125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시호비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대형할인마트 영업일수와 동일	문의: 영업본부 (02-2141-1250)

단, 최근의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가 입점된 할인마트의 정책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입점 할인마트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 근무하지 못할 경우 안경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맹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 사업주의 부재시 그 사정을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②	대체 가능 인력 ^③	비고 ^④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①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②	비고 ^③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본사 영업본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본사 마케팅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본사 구매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가맹본부 영업본부에서 하며 연락처는 전화 02-2141-1250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시호비전 안경원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총광고비에서 가맹점수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총광고비 / 가맹점수	광고계획과 비용부담내역을 사전에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	대중매체 광고 명절,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개별 행사	지역특성에 맞는 판촉물 등	개별행사는 각 가맹점에서 개별로 진행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판촉물, 전단, 지면, 음성, 영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유지, 가맹점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와 광고, 판촉활동에 대하여 협의 하셔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8	비용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금에 포함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비용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9~28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8~27(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인테리어비용 포함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가맹금에 포함
물품구매	- 가맹점 개설에 따른 장비, 비품구매 등	D-7(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발생시 마다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구성	분쟁해결절차	비고
가맹본부 담당임원 2 가맹점 대표 1 외부위촉위원 1 (총 4인)	분쟁해결신청 → 접수 → 사실 관계 조사(15일 내외) → 조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	문의 : 당사 영업본부 (02-2141-1250)

또한 고객클레임이 연 3회 이상 발생되어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판정결과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지 결정유무는 가맹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위원이 해당 가맹점의 명백한 잘못으로 판정한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구성	분쟁해결절차	비고
가맹본부 담당임원 2 가맹점 대표 1 외부위촉위원 1 (총 4인)	위원회 소집 → 안전상정 → 진상조사 → 소명기회 부여 → 진상위원 심의 → 심의내용 결정	문의 : 당사 영업본부 (02-2141-1250)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가 비용분담을 하게 됩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본부 (02-2141-125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영업본부 (02-2141-125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시호비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①	신용제공자 ^②	금액 ^③	신용 형태 ^④	신용제공 조건 ^⑤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매출부진 경영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시호비전 안경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입 안경사 및 신규오픈매장 교육	회사 소개 POS, SCUBE 전산사용교육 자동발주 교육 RGP, 누진다초점렌즈 교육 고객응대	집단강의 집단강의 집단강의 집단강의 실습	신입 안경사 입사후 2개월 이내 신규오픈매장 가맹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정기교육 (보수 교육)	리더십 교육 CS교육(고객응대, Claim) RGP, 다초점 교육 상품교육 전산시스템 교육	집단강의 실습 집단강의 집단강의 집단강의	1년 1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점대표자 교육.	리더십 교육 코칭 및 팀원 관리교육 점장 자질향상 교육	집단강의	분기 1회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시호비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정기교육	1일 6시간 (1회)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점 대표자교육	1일 8시간 (4회)	실비	분기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9조 ①항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9조 ②항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해당사항없음

[참조 : 안경업종의 경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사람의 안경사가 한 개의 안경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영점 운영이 불가능한 업종입니다.]